

연세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규정 개정안 초안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 및 학칙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연세대학교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 보호함과 동시에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자유로운 학습환경과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본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 ② 제 ①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또는 학교의 통제를 받는 제3자가 포함된다. 피해자, 가해자 일방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총장의 책무)

본 대학의 총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와 운영, 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① 상담창구 마련
- ②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 지원
- ③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 ④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 등의 대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⑤ 성폭력 관련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 금지

제5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을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보복으로부터의 보호)

선의를 보고자 또는 조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은 법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고의로 허위보고를 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징계의 사유가 된다.

제 2장 담당기관

제 1절 성폭력상담소

제8조(설치)

성폭력 상담실(이하 '상담실')을 총장 직속의 독자적인 기구로 설치하고 상담업무 및 사건 처리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인적 지원을 한다.

제9조(구성)

-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 ② 상담실장은 학외 관련기관(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성폭력 사건 해결과 예방에 대한 활동 경력을 갖춘 자로 임명한다.
- ③ 상담실에는 전임상담원과 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10조(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 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11조(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일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교무처장, 대학원 교학처장, 상담실장으로 교수 6인, 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으로 학생 3인, 노동조합장으로 구성된다.

③ 일반 위원은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당연직 포함)은 5인 이상으로 한다. 일반위원은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2년, 일반 위원은 1년으로 하며, 단 당연직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과 일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특정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본 규정을 업수하고, 위원회를 본 규정에 의거해 운영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학내 언론을 통해 공개사과한다.

제14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피해자 보호
5.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5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6조(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④ 상담실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란, 상담실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 등이 자유롭고 정당한 환경에서 상담을 하거나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함 및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함을 뜻한다.

⑤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라 하더라도,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

제18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 해야한다.

②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4. 가해자의 사회봉사 명령
5.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명령

6.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 해야한다.

제19조(조사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조사결과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② 위원회가 성폭력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일주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조치 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붙여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① 성폭력 상담원은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토의에 부처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다.

제21조(사건조사 및 처리 기록 보존 의무)

상담실과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상담, 사건조사,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의 전 과정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정책검토와 평가)

본 대학에서는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과 처리절차를 회람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검토를 받으며 규정개선의 노력을 한다.

제23조(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 되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연세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 18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되는 행위)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①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일

② 상대의 신체에 음란한 접촉을 하는 것

③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특전을 빌미로 간음, 추행, 또는 성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 및 성적인 성격의 행동이 성적이나 추천서, 졸업논문 등의 평가에 반영되는 것

④ 술좌석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

⑤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⑥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한 그림 등을 보내는 것

⑦ 기타 성적이거나 본질적으로 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와 발언

제3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중인 교원, 직원, 학생이 또는 학교의 통제를 받는 제3자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피해자 혹은 가해자 일방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① 교원은 전임교수, 시간강사, 조교, 촉탁직, 외인교수로 학생은 본교 학부, 석사, 박사, 평생교육과정의 재적생, 연구생, 교환학생으로 직원은 일반직, 기능직, 기성회직, 일용직을 포함한다.

② 제3자는 자원봉사자, 연구원, 조교, 코치 등 학교의 통제를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단, ①항과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피

해자의 입장에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성폭력상담실장)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의 상담실장은 학의 관련기관(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등 성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인 중에서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5조(상담원의 자격)

상담원은 규정 제 10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성폭력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 단, 전문적인 지식이라 함은 아래의 3항 중 1항 이상을 반드시 충족시키는 것을 뜻한다.

- ① 학의 관련기관(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② 학의 관련기관(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서 관련 활동을 한 자
- ③ 여성학 관련 분야의 전공자

제6조(상담원의 수)

상담실에는 2인 이상의 전임상담원을 두어야 하며, 기타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7조(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②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 ④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필요시의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
- ⑤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의 전과정 기록 보존
- ⑥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8조(성폭력 예방교육)

- ① 성폭력 예방 교육은 성폭력 상담실에서 실시한다.
- ②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2회 이상, 1회당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해야 한다.
-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폭력 사건 발생시 학칙에 의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별도의 예방 교육 시간이 마련되지 않는 책자 배포와 게시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상담실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그 대책 수립 및 보고된 성폭력사건처리 등 관련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그리고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10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일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교무처장, 대학원 교학처장, 상담실장으로 교수 6인, 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으로 학생 3인,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장으로 구성된다.

③ 일반 위원은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단 일반위원은 정기회의와 각각 직원과 학생, 교수가 관련된 성폭력 사안에만 참여한다. 이 경우 참여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된다.

④ 일반 위원 중 교수는 상담실장의 추천, 직원은 조합장 추천, 학생은 총여학생회 추천으로 한다.

⑤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당연직, 일반위원 포함)은 5인 이상으로 한다.

⑥ 모든 위원들은 한 학기에 2회, 1회 당 두시간 이상 성폭력 사건 해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여성부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다. 위원 교육에 불참할 시에는 위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의 교육을 받지 않을 시에 해당위원은 위원직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것에 대해 학교 언론사를 통해 공개 사과한다. 단,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교육에 불참할 시에는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학내 언론사를 통해 공개사과한다.

⑦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의무 교육 이외의 보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 ① 성폭력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거수, 투표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의결한다.
- ② 성폭력사건 이외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거수, 투표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의결한다.
- ③ 직원과 학생, 교수가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이란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일방이 직원 또는 학생, 교수인 사안을 말한다.

제12조(특별위원회)

- ① 위원회 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 ③ 위원 구성시 여성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소위원회)

- ①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 ③ 위원 구성시 여성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 ①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 ②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 시 그 피해자와 同性의 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상담 시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 ④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⑤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해자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상담실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신고된 사건의 조사와 해결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경과할 수 없다.

제15조(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 ①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② 심의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가해자, 가해자의 친족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 ⑦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⑧ 제⑥,⑦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징계 및 조치)

-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해야 하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 할 수 있다.
- ② 가해자는 사건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가해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건 조사와 처리에 필요한 자기 변호나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 처리를 진행한다.
- ③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위원회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내려야 한다.
 2. 공개사과는 연세춘추 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3. 위원회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은 성폭력상담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6. 가해자의 일정기간 자원봉사를 명할 수 있다.
 7.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심리적, 의료적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명령을 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9. 가해자가 외부인인 경우 위원회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 징계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 ④ 사건 발생 후, 위원회는 가해자가 학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위로 변동하는 것을 막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기관에 요구하거나 발의해야 한다.
 1. 교원과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사표 수리를 유보한다.
 2. 학생인 경우, 군입대 휴학이나 졸업신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3. 졸업 예정자인 경우, 졸업을 유보시킨다.
 4. 그 외의 경우(교환학생, 안식년 등) 지위변동을 막는 행정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성폭력 행위를 방조한 자는 가해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

한 보복은 성폭력과 똑같이 심각한 행위로 간주한다.

⑥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를 방조 또는 동조한 자, 또는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2차 가해자에게도 징계 및 조치를 내려야 한다.

⑦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5일 이내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 해야 한다.

⑧ 대책위원이 가해자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이를 2차가해로 규정하며 해당 위원에게 2차가해에 따른 징계 및 조치를 내려야 한다.

⑨ 규정 제6조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일주일 이상 학내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⑩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적 구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7.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